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건설관리과-27062
등록일자	2015.10.27.
결재일자	2015.10.2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건설행정팀장	건설관리과장	안전교통국장	부구청장 직위대리	구청장
김종삼	이갑렬	송진영	조흥기	주윤중	10/28 신연희
협조자	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				

『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』 전부개정 계획

■ 건 명 :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

■ 개정사유

- 상위 법령인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 및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개정내용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반영으로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

■ 주요내용

- 상위법 근거한 조항 삭제
 - 경합신청의 처리 규정 삭제(현행 제4조)
⇒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규정 조항
 - 과태료 부과·징수 관련 규정 삭제(현행 제10조의2 ~ 제10조의 6)
⇒ 도로법·도로법시행령·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 활용에 따른 규정 삭제
 - 점용료의 감면 규정 삭제(현행 제12조)
⇒ 도로법·도로법시행령·도로법시행규칙 규정 조항
- 기타 불필요한 별지서식 삭제
 - 도로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

강 남 구
(건설관리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로법, 도로법시행령, 도로법시행규칙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·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·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5.01.02.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(제1217호)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거 및 기준 검토결과 적정함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남구 주민 및 건축 사업자 등 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 별 검토사항 (계속)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○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문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○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/table> <p>· 관련부서(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, 보육지원과) 검토완료</p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○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문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○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○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문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○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사항 없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사항 없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『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』 전부개정 계획

상위 법령인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 및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개정내용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반영으로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 서식이 1/2이상에 달해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1 개정근거

- 도로법 제117조(과태료), 도로법 제68조(점용료 징수의 제한)
- 도로법 시행령 제73조(점용료의 감면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
-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2 개정사유

- 도로법 등 상위 법령 근거 조문 중복 삭제
- 불필요한 별지 서식 삭제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, 법규 용어 등 정비

3 주요내용

- 상위법 근거한 조항 삭제
 - 경합신청의 처리 규정 삭제(현행 제4조)
 - ⇒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규정 조항
 - 과태료 부과·징수 관련 규정 삭제(현행 제10조의2~제10조의 6)
 - ⇒ 도로법시행령·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 활용
 - 점용료의 감면 규정 삭제(현행 제12조)
 - ⇒ 도로법·도로법시행령·도로법시행규칙 규정 조항

기타 불필요한 별지서식 삭제

- 도로법시행규칙·질서위반행위규제법·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

4 추진경과

구 분	날 짜	통보내용	주관부서	비 고
규제유무 사전검토	10.01	규제유무 해당없음	기획예산과	
성별영향분석평가	10.06	원안동의	보육지원과	보육지원과-42116호
부패영향평가	10.02	원안동의	감사담당관	감사담당관-14191호
입안심사	10.12	원안동의	기획예산과	기획예산과-15736호

5 향후일정

구 분	날 짜	추진내용	주관부서	비 고
입 법 예 고	11월초	20일 이상 의견수렴	건설관리과	
조례규칙심의회 상 정	11.23	건설관리과 → 기획예산과	기획예산과	
조례규칙심의회 개 최	11.27	기획예산과	기획예산과	
서울시 사전보고	11.30	사전보고	기획예산과	공포예정 15일전
규 칙 공 포	12.18	구보 등에 게재	기획예산과 공 보 실	

6 행정사항

- 입법예고 시 구보(매주 금요일 발행) 및 인터넷 게재 별도 요청 : 공보실, 전산정보과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